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42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3
IV. 검토의견	6
1. 총괄검토	6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6
(2) 제정안의 개관	10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1) 총칙	15
(2)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19
(3)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32
(4)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36
(5)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	42
(6)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	46
(7)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53
(8) 보칙	59
(9) 벌칙	63
(10) 부칙	64
※ 참고자료	66
1. 현행 법률 규정과 제정안과의 관계	66

2. KOTRA, 수출지원센터 상담창구 현황	67
3. 관세대응체계 구축 사례	69
4. 관세대응 긴급지원 사례	70
5. 수출전략 수립 지원	72
6. 중소벤처기업부 수출기업 교육 지원 현황	74
7.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인력 양성 지원 현황	76
8. 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현황	77
9. 중소기업 통관애로	8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동아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5. 12. 30.
3.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수출 및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조사업 수준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미흡한 실정임.

그 결과 부처 및 사업별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이 분산되어 사업간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전략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외환경 변화 대응,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금융·투자, 현지 거점 구축 등 현장의 핵심 수요를 포괄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정기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전담기관의 지정, 해외판로 확대·교육·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아울러 실태조사, 성과평가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를 통하여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을 명시하고, '수출·해외진출' 정의 마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명시하고자 함.

2) '수출·해외진출'을 정의함으로써, 물품 수출 외에도 서비스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체계 강화(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촉진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한 근거 신설(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1) 중소기업에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접수, 피해 파악 및 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수출 및 무역환

경 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 지원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전 과정에 대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19조부터 제30조까지).

- 1) 현행 법률 내 공동 연구개발, 해외마케팅, 해외규격인증, 수출 중소기업 지정 지원에 대한 조항을 이관하고자 함.
- 2) 수출 전략수립부터 제품개발, 교육, 인력양성, 마케팅, 통관까지 수출 전 과정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마.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 신설(안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

- 1)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지원대상 선별, 지원효과 점검을 통해 지원효과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함.
- 2) 해외진출(예정)기업의 사전준비, 현지 인력·법률·네트워킹 등 현지화, 금융 등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안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

- 1) 현행 법률 내 해외 바이어 발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지원조항을 동 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 2) 우수 조달품목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개척시장 발굴을 위한 ODA 사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안 제46조부터 제51조까지).

1) 현행 법률 내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이관하여 국내외 지원거점 설치·운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재외공관·타 부처 해외거점·민간과의 협력, 전자상거래 수출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운영 등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함.

아. 보칙 및 벌칙 사항 마련(안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을 신설함.

IV. 검토의견

1. 총괄검토

(1) 제정안의 발의배경 및 입법필요성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이 대기업의 하청 구조나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에는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완제품 중심의 수출이 확대되는 등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중소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설립 증가 및 기술수출 확대 등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임. 특히 지난 2026년 1월 28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에 따르면, 2025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186억달러로, 역대 중소기업 수출액 최고치(잠정치 기준)를 기록하였음.

연도별 중소기업 수출액 추이

(억 달러, %)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수출액	1,155	1,145	1,097	1,110	1,186
증감률	14.7	△0.9	△4.2	1.2	6.9

자료 : 「2025년 중소기업 수출동향」, 중소벤처기업부, 2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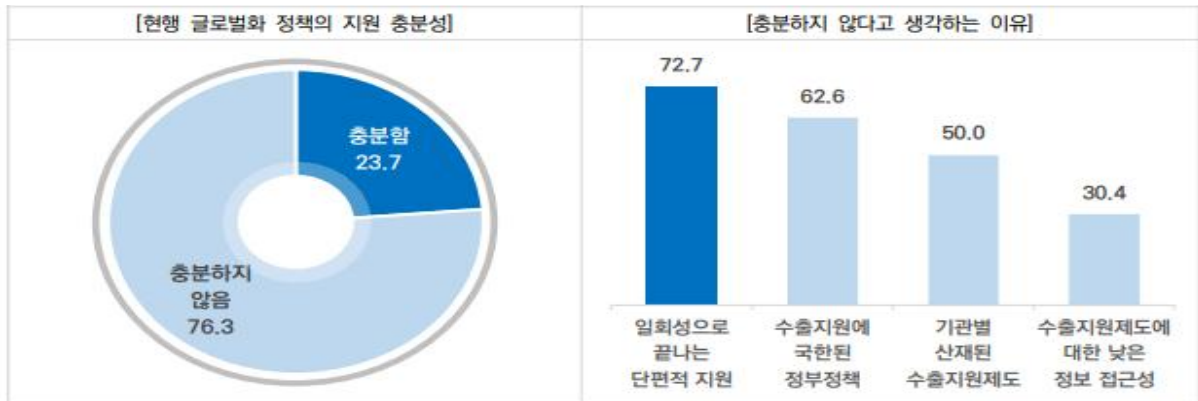
최근의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경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과 같은 위험요인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최근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 장벽이 강화되면서, 대기업에 비해 정보력과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관세 인상이나 수입 규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외에도 환율 변동성 증가, 해외 인증 및 규제 대응 부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마케팅, 물류비, 전시회 참가 등 초기 비용 자금조달 문제 등 다양한 요인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중소기업의 성장과 육성을 위한 일반법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외무역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그 근거가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일관성있는 맞춤형 지원 역시 부족한 상황임.

실제 많은 중소기업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화 관련 지원 정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지원’, ‘수출지원에 국한된 정부정책’, ‘기관별로 산재된 수출지원제도’, ‘수출지원제도에 대한 낮은 정보 접근성’ 등을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음.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평가



출처 :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4.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따라서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글로벌 경쟁력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역량 강화, 수출 외에 해외직접투자나 현지법인 설립 등 다양한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동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통상변화에 대한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과 상담창구 운영 및 긴급지원·사후관리, 교육,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수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책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동 제정안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무역법」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과 입법취지가 유사하고, 기존 법률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과 유사·중복 정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방식의 복잡·다양화 및 그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근거는 개별법에 산재하고 있어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추진 및 일원화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동 제정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제2216150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정안의 개관

동 제정안은 총 9장 57개 조문 및 부칙 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총칙은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목적,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에 관한 장으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내용임.

제3장은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에 관한 장으로,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보 제공, 상담창구 운영, 대응체계 구축, 긴급지원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음.

제4장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장으로, 총 1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출전략 수립 지원,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교육·전문인력 양성·해외마케팅 지원, 온라인 수출 활성화, 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금융·통관·물류·유통 지원, 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등 수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5장은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에 관한 장으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대상과 기준, 사전준비 지원, 교육·전문인력 양성·현지화 지원, 금융 지원, 사후관리 등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6장은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 지원에 관한 장으로, 총 7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외국정부와의 협력,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시장별 특화지원 등의 내용임.

제7장은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에 관한 장으로, 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세제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8장은 보칙으로, 총 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고와 검사, 지원사업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 제도 운영 관련 부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제9장은 벌칙으로, 동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제정안 주요 내용

장	조	조 제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제6조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제7조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제8조	실태조사
	제9조	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
	제10조	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
	제11조	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12조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
	제13조	성과평가
제3장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제14조	정보 제공 등
	제15조	상담창구의 운영
	제16조	대응체계 구축
	제17조	긴급지원
	제18조	사후관리
제4장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제19조	수출전략 수립 지원
	제20조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제21조	교육 지원
	제22조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23조	해외마케팅 지원
	제24조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제25조	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제26조	금융지원

장	조	조 제목
	제27조	통관 지원
	제28조	물류 및 유통 지원
	제29조	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등
	제30조	유형별·단계별 수출성장 촉진
제5장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	제31조	지원대상
	제32조	지원기준
	제33조	사전준비 지원
	제34조	교육 지원
	제35조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제36조	현지화 지원
	제37조	금융지원
	제38조	사후관리
제6장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	제39조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제40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제41조	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제42조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제43조	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제44조	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제45조	시장별 특화지원
제7장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제46조	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제47조	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제48조	민관협력 활성화
	제49조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50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1조	세제지원 등
제8장 보칙	제52조	보고와 검사
	제53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장	조	조 제목
	제54조	사업비 환수
	제5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5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제57조	과태료
부칙		시행일

2.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

총칙에서는 동 법의 제정 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해외로 이전(移轉)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물품
나. 용역
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3. “해외진출”이란 중소기업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이하 “거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①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자는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내 기업 생태계 발

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자와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 “수출”,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함.

제정안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¹⁾로 정의하여 제정안에 따른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의 개념을 다른

1) 「중소기업기본법」

법률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연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한, 제정안은 ‘수출’을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하위 법령을 통해 수출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정안도 하위 법령에서 수출의 유형과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됨.

한편, 제정안은 해당 정의 조항에서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수출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그 외에 ‘수출’의 대상은 “물품”,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물품 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바, 「대외무역법」에서의 입법례²⁾와 같이 수출의 대상에 대해서도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의 경우 제정안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제정안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별·기관별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제5조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2) 「대외무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수입을 말한다.

가. 물품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2)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안 제2장은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실태조사, 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 등 정책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6조(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관련 통계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촉진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에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촉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과 관련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수출 및 해외진출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공동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촉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 분석
5. 제13조에 따른 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관세청장
 - 가.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 나. 수출·수입 물품의 품명·수량·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2.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정보
 - 나. 중소기업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지급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3.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른 국제수지 중 경상수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재정경제부장관
 - 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 나. 상품 및 서비스수출·수입의 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4.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기술무역통계의 기술수출입 대가의 지급 및 수령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가. 기술도입자, 기술제공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나. 국가명, 기술료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계약일, 도입기술명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보의 제공 방법, 그 밖에 정보 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성과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에 따른 촉진계획 및 제9조에 따른 통합공고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먼저, 안 제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3년마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면서, 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는 촉진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이 조정·성과평가 등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안 제8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

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경영실태, 수출 및 해외진출 장애요인 및 국내 경제 기여효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 진술 또는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정안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촉진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것은 정부가 관련 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대외무역법」 제7조³⁾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매년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바, 제정안에 따른 촉진계획과 그 내용 및 범위가 일부 중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안에 따른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외무

3) 「대외무역법」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과 통상을 진흥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통상진흥 시책을 세워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상진흥 시책의 기본 방향
2. 국제통상 여건의 분석과 전망
3. 무역·통상 협상 추진 방안과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4. 통상진흥을 위한 자문, 지도, 대외 홍보, 전시, 상담 알선, 전문인력 양성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방안
5. 통상 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활용 방안
6.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역법」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과의 연계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유사 계획과의 연계 의무를 규정한 입법례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5조(전공의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간호법

제34조(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을 양성하여 보건 의료기관 등이 원활히 간호사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사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의료법」 제60조의2에 따른 의료인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초광역권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광자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권역별 관광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따른 촉진계획은 「대외무역

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있는 통상진흥 시책과 중복되어 현장의 혼란과 행정낭비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제정안 제7조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위원회’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경우에도 각각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이미 기존에 구성된 ‘중소기업정책심의회’⁴⁾ 및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 중인 ‘중소기업 실태조사’⁵⁾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중소기업정책심의회) ①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중소기업 정책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중소기업 보호·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20조에 따른 당해연도 육성계획 수립 및 전년도 육성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0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6.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신설 및 변경사업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 보호·육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중소기업 및 경제·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⑦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실무조정회의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1조(중소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및 경영 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해당 실태조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는 사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실태조사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태조사

직하다는 입장임.

행정안전부 역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⁶⁾에 따라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에 제한되므로 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는 기존 법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의 통상진흥 시책에서도 부처별·기관별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시책을 제출받고 있어 행정업무상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의 전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기존의 통상진흥 시책 내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활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경우 실태조사 대상이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수출기업에 있어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⁷⁾ 이들을 포괄할 필요가 있고, 수출품목, 해외진출 유형 등 수출 및 해

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2024년 국가데이터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수출기업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5.8%로 조사됨.(출처 : 국가데이터연구원, “기업특성별로 본 소상공인 수출기업 현황”, SRI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외진출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정안의 실태조사 근거 조항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안 제9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시행하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도록 함.

이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여러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고,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범부처 차원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일원화된 안내창구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하여 9개 부처에서 총 58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제정안과 같이 통합된 안내창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부처별 수출지원사업 현황

부처	건수(개)	예산(백만원)
산업부	17	718,219
중기부	9	239,223
농식품부	12	104,025
환경부	2	29,343
과기부	11	16,754
관세청	1	6,200
산림청	2	3,401
국토부	3	2,808
조달청	1	2,759
합계	58	1,122,732

출처 : 중소기업 정책연계방안 연구(수출분야)(중소벤처기업연구원, '24.12월)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미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무역법」 제7조에 근거하여 통상진흥 시책에 포함된 통상진흥 및 수출지원사업을 통합하여 공고·배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복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낮으며, 성과평가 역시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성과평가 근거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각 부처의 촉진계획을 통합하여 공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여러 부처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을 연계하고, 수요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통합공고의 필요성에 동의하되, 행정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통상진흥 시책을 활용하여 통합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다만, 중소기업의 정책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

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통합공고의 대상을 ‘촉진계획’이 아닌 ‘지원사업’으로 수정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성과평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2⁸⁾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안 제1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하여 관세청장,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일정한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함.

이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중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집이 제한되는 민감한 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8)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분석·평가 및 효율화(이하 “효율화”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의2.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분석·평가

제정안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 분석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자료·정보는 다음과 같음.

제정안 제12조에 따른 요청 대상 자료·정보

자료·정보	법적 근거	보유주체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관세법」 제241조	관세청장
수출·수입 물품의 품명·수량·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	「관세법」 제241조	관세청장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재정경제부장관
중소기업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 지급 정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재정경제부장관
상품 및 서비스 수출·수입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한국은행법」 제86조	재정경제부장관
상품 및 서비스수출·수입의 금액, 거래 형태 등에 관련된 정보	「한국은행법」 제86조	재정경제부장관
기술수출입 관련 기술도입자, 기술제공자의 상호, 성명 등에 관련된 정보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술수출입 관련 국가명, 기술료 지급일자, 지급액, 지급사유, 계약일, 도입기술명 등에 관련된 정보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제정안에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료·정보 중 수출입자의 상호와 품명·수량·금액 등은 개별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법률에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를 직접 명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을 분석·공표하는 것은 기존에 관세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는 ‘무역통계’와 성격과 범위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 물품의 수출해 대해서는 관세청과 협조하여 분기별 ‘중소기업 수출동향’을 공표하고는 있으나, 물품 수출 외에 서비스 수출입 및 해외진출에 관한 데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접근 및 분석이 불가능한바, 제정안이 지원대상을 용역·전자적무체물의 수출과 해외진출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 수출동향’의 분석 및 공표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관세청에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정보제공 범위를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안 제3장은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상담창구 운영, 수출 및 해외진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긴급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14조(정보 제공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수출 및 해외진출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수집 및 중소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창구의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변화 및 수출입 관련 애로사항의 접수 및 청취 2. 통상 분쟁 발생 시 법률, 기술, 시장 전문가의 상담 및 자문 지원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창구를 통해 피해가 접수된 기업에 대해 지원사업을 연계할 수 있다. 제16조(대응체계 구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해외진출 환경 변화 발생에 대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대응체계(이하 “대응체계”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 1.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보·자료 수집, 분석 및 공유 2.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 상담 창구 공동 운영 3.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정책 수립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긴급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융자·보증 및 긴급 물류·통관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무역환경의 변화로 중소기업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립된 지원정책을 긴급으로 실시할 것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로 인해 애로 또는 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애로 및 피해 현황 지속 점검 2. 기업 연계지원 현황 점검 및 추가 지원 3. 그 밖에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 축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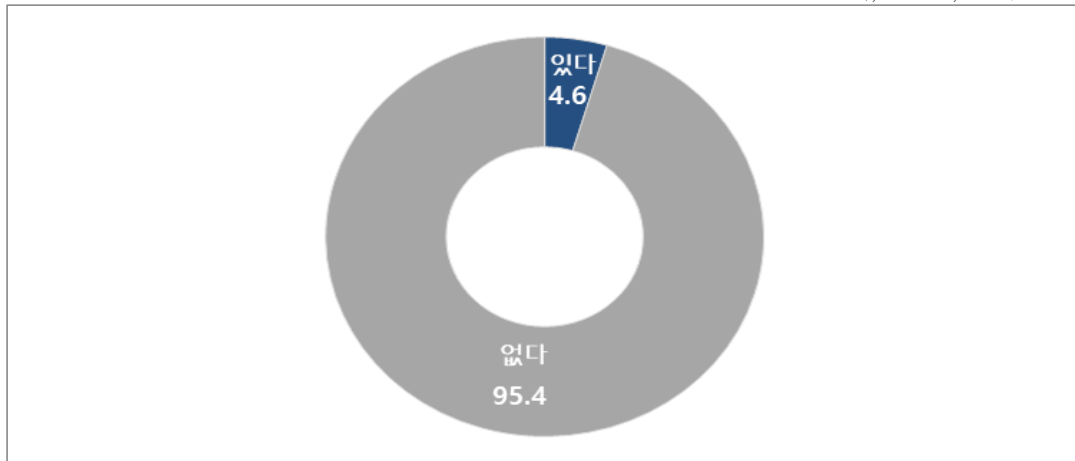
제정안은 중소기업이 수출 및 해외진출에 있어 직면하는 다양한 대외환경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창구를 통한 전문가 자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실제 2021년 11월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⁹⁾

9)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 2021.11, p.11.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보유 여부

(Base: 전체, n=500, 단위: %)



출처 :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1)

즉,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자체적으로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할 인력과 자금 등이 부족하여 수출과 해외진출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바, 정부가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임.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따른 정보제공, 상담창구 운영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가 공신력있는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지원, 글로벌 이슈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피해에

대한 긴급지원과 추가적인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및 무역환경 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4)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안 제4장은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19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별 수출전략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가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수출용으로의 전환이나 기존 제품 또는 서비스와의 융복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과의 산업·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교육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출 지원을 위한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의 개발 2. 수출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경제환경 및 행정, 법제도, 금융 등 해외지역별 교육과정 운영 4. 수출입 통관 관련 교육과정 운영 5. 그 밖에 수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수출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수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23조(해외마케팅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2.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홍보 활동 지원
 3.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확대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지원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입점 지원
2.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지원
3. 전자상거래와 연계한 해외마케팅 및 물류 지원
4.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육성
5. 그 밖에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25조(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인증 또는 규격 획득
2. 공급망 관련 규제 대응
3. 외국의 표시 규제 준수
4. 그 밖에 해외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6조(금융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수출 준비 및 수출 활동에 대해 출연·보조·융자·보증·투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통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입 물품의 신고 및 검사 관련 절차 지원
2. 수출입 통관에 관한 전문가 자문 지원

3. 그 밖에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수출 물류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운영 및 공동활용 지원에 관한 사업
2. 제46조제1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관, 시설 또는 조직을 활용한 중소기업 전용 해외 판매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의 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물류 및 유통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29조(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중소기업자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자 중 수출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2. 수출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의 수출 고성장을 위해 지원사업 우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유형별·단계별 수출성장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안 제19조부터 안 제28조까지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수출전략 수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교육 및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해외 수출규제 대응, 통관 및 물류·유통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매년 수출 중소기업의 25% 내외가 다음 1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이른바 ‘수출중단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¹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지원 위주의 정부 지원정책을 문제점으로 지목¹¹⁾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수출 중소기업이 중장기적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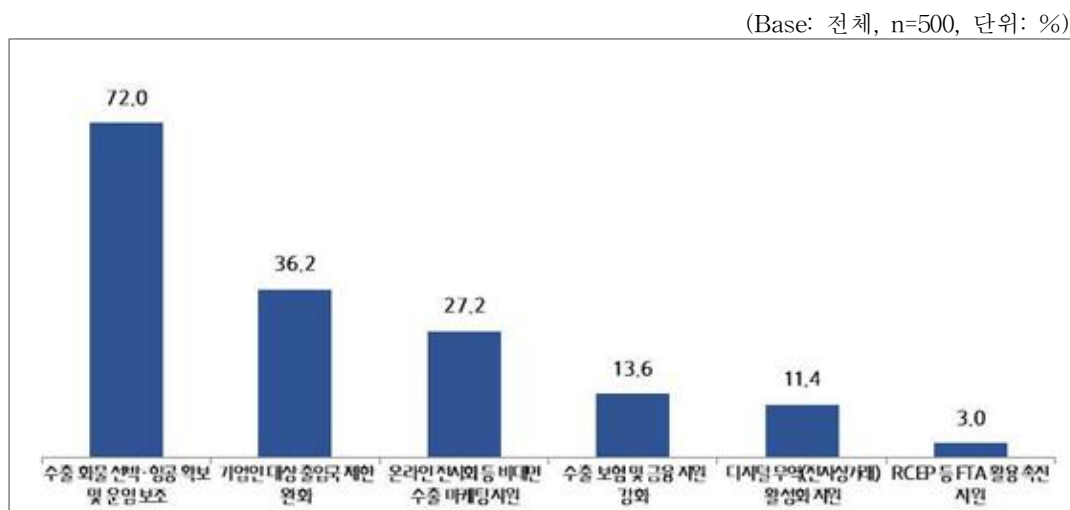
특히,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수출 화물 선박·항공 확보 및 운임 보조”, “기업인 대상 출입국 제한 완화”, “온라인 전시회 등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 “수출 보험 및 금융 지원 강화”,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등의 시책을

10) 연도별 수출기업 대비 수출중단기업 비율 : (‘22) 25.0% → (‘23) 24.1% → (‘24) 24.8%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11) 본 보고서 p.8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평가” 표 참조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¹²⁾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출처 :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중소기업중앙회, 2021)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의 지원시책 중 정부 차원의 전문 인력 양성 및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사업, 통관 지원 및 물류·유통 지원 사업 등은 기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정안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과 그 취지 및 정책 층위가 상이하므로,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바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12)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 2021.11, p.15.

안 제29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사업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안 제30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규모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수출 중소기업은 기업의 규모와 유형이 다양하므로 기업의 유형과 성장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시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지정된 중소기업자를 우선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29조제3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수출 중소기업 지정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식품기업 수출 지원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출 중소기업 우선지원 근거를 재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러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고려하여 지정된 수출 중소기업 우선지원 근거를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에 동의함.

(5)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

안 제5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31조(지원대상)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진출을 추진하거나 완료한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2. 해외 법인과 공동 투자 3. 해외 영업소, 지점 등 설치·확장·운영 4. 그 밖에 해외진출에 필요한 사항
제32조(지원기준)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3조부터 제38조에 따른 지원 시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국내 경제에의 기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제12조에 따른 해외진출 동향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다.
제33조(사전준비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제31조에 따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용자 및 투자 등의 지원 2.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및 컨설팅 3.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지원 4.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5.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인·허가 지원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4조(교육 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진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발 2. 법제도, 금융 등 해외시장 관련 교육과정 운영

3. 그 밖에 해외진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

제36조(현지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외 현지 인력 채용 및 교육 지원
2. 해외 현지 투자 유치 지원
3. 현지 법률·세무·회계·노무 지원
4. 해외 현지 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따른 현지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7조(금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융자·투자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은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수출자금과 해외투자자금의 융자
2.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제3조에 따른 대외경제협력기금에서의 출자 및 융자
3. 「무역보험법」에 따른 해외투자보험의 지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의 융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신용보증의 우선적 실시

제38조(사후관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효과 점검을 위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후관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31조와 안 제32조는 각각 해외진출 지원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외 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전준비, 교육 및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현지화, 금융지원 및 사후관리 등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현행 중소기업 글로벌화 정책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수출지원에 국한된 정책이 지목되고 있는바,¹³⁾ 중소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다각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안 제31조는 해외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의 해외 법인 설립”, “해외 법인과 공동 투자”, “해외 영업소, 지점 등 설치·확장·운영” 등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2조제3호¹⁴⁾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외진출’의 개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됨.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당 조항은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음.

13) 본 보고서 p.8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에 대한 기업의 평가” 표 참조

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해외진출”이란 중소기업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이하 “거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시책 중 사전준비 지원, 교육지원, 정부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 및 현지화 지원 등은 기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미 다양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정책이 여러 법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처 간 사업의 물리적 중복을 배제하기보다는 각 부처와 공공기관들과의 상호 연계를 통해 지원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안 제37조제2항은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증기관을 통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보증 외에 기술보증도 추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6)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

안 제6장은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39조(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2.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해외진출거점 확보 3.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해외 구매자 발굴을 위한 대·중소기업 간 협력 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위탁하거나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및 국내외 시장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이 외국 정부, 공공 기관 또는 국제 기구가 발주하는 조달 시장에 진출하여 안정적인 수출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공구매 납품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41조(외국정부 등과의 협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관련 국제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다. 제42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과의 중소기업 분야 협력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

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하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2.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관리, 점검 및 개선사항 발굴
 3.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4.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에 관한 홍보
 5. 그 밖에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①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 다변화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생산비중이 높은 품목 중 수출이 유망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발굴·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공동 개척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과 실적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유망품목의 지정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다수의 중소기업자가 수출 및 해외진출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도입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상표 개발 비용
2.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그 운영자금
3. 공동상표 제품의 품질 향상 및 디자인 개발
4.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판매와 수출
5. 공동상표 제품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공동상표 제품의 판매 활동 강화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시장별 특화지원)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수출 및 해외진출 시장별 특성 및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이하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시장별 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외시장별 특성에 맞는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2. 해외시장별 특수성을 고려한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 3. 그 밖에 해외시장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체적으로 안 제39조와 안 제40조는 각각 중소기업부장관이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안 제41조와 안 제42조는 각각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협력 및 중소기업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는 중소기업 수출 유망품목의 육성 및 지원, 공동상표 도입 지원, 해외시장별 지원시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정안은 지속적인 수출 및 해외진출 성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수요 창출과 수출 유망 품목 발굴 및 지원, 외교적 지원 등 지속적인 수출 해외진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

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히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해외 수요를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해외 공공조달 시장의 경우 거래처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 민간 거래처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음. 아울러 전 세계 공공조달 지출은 연간 약 11~13조 달러 수준으로 세계 GDP의 약 12%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국제조달의 규모는 연간 약 1.9조 달러 수준으로 국내 공공조달의 약 13배 수준임.¹⁵⁾

그에 비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참여규모는 비교적 낮은 편으로, 조달청에 따르면 2024년 우리 기업의 UN 조달시장 참여규모는 3억 300만 달러로 UN 전체 조달 규모의 1.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됨. 다만, 이와 같은 통계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포함한 것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에 관한 통계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으나 중소기업의 진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됨.

2026년 1월 29일 조달청이 개최한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과의 간담회 결과 해외조달시장 진출 기업들은 정보 획득의 어려움, 현지 네

1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자료

트위크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한 바 있는데,¹⁶⁾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인력과 조직, 자본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되는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와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¹⁷⁾에 따라 중앙조달기관인 조달청이 추진하는 업무로, 권한의 중첩에 의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국내기업의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이미 수행 중인 사업이므로 중복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에 대하여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¹⁸⁾에 따라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제정안으로 이관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16) 조달청 보도자료 “조달청, 글로벌 조달시장 개척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2026. 1. 29.

1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 ① 조달청장은 조달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내 관련 기관 및 각 국 조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내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1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판로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의 국외 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지원에 관한 사업

적인 권한의 중첩이나 혼란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입장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중소기업 ODA 사업 추진 권한을 규정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42조와 관련하여 외교부는 정부 ODA 사업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주관기관¹⁹⁾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별 시행기관의 ODA 사업 추진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제개발협력 지원 사업을 수행 중²⁰⁾이므로 별도의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예산 및 행정상의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ODA 사업 추진 근거 및 전담기관 근거는 삭제하

19)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2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 ① 양자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② 다자간 개발협력 중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과의 협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밖의 기구와의 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한다.

제13조(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 분야별 기본계획안과 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야별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위원회 제출
3.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심사 및 조정
4. 위원회가 위임하는 소관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평가
5.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이행 점검
6.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발굴, 추진 및 평가를 위한 점검 및 지원
7. 소관 분야의 종합기본계획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합시행계획의 홍보
8.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역할 및 기능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3. 무역거래, 국내외 기업 간 투자 협력과 산업기술 교류의 알선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지원

되, 국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당시 중소벤처기업부의 ODA 사업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ODA 지원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둘 필요성은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정안 제39조에 따른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사업 역시 기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타 부처 소관 법령에서도 다양한 수출 지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관이 소관 업무의 성격과 지원대상을 고려하여 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7)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안 제7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해외 지원거점 구축, 재외공관 등과의 협력, 민관협력 활성화,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전담기관 지정 및 세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정 안
제46조(지원거점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에 지원거점(이하 “해외진출 지원거점”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해 국내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거점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재외공관 및 타 기관과의 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외공관 2.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시설 또는 조직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민관협력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활용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 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2.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컨설팅
3. 기술·디자인 및 품질의 개발·향상을 위한 지원
4. 해외 공공조달 정보의 제공
5.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에 관한 상담·컨설팅 지원
6.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7.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입 및 해외진출 동향의 분석
8.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의 분석
9.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③ 국가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46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 지원거점을 설치하고, 국내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

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을 국내
외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점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미 해
외에 131개의 해외무역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바, 대통령 수석·보좌
관 회의에서 지적된 ‘공공기관 해외거점 효율화 지시’에 따라 추진 중
인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현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K-마루)’과 상
충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지원거점 운영을 통한 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창구를 마련할 필요성에 동의하며, 제정안
에 따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는 이미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²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이므로 별도의 중복성 문제는 발생할
여지는 없으나, 해외진출 지원거점 마련은 공공기관 해외거점 효율화
에 관한 정부 기조와 조화가 필요하므로 공공 또는 민간에서 이미 구
축한 지원거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는 있다는 입
장임.

안 제50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
원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며, 전담기
관이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세청, 재정경제

21)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외국인 구매자의 발굴,
무역보험, 수출입금융, 기술·품질 및 디자인 개발지원 등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료를 요청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전담기관을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 기존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기능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정안이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만이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각 산업 특성 및 부처별 정책 필요성을 반영한 산업별 전담기관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관세청은 안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공한 정보·자료는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를 다시 전담기관에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다양한 글로벌 복합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일한 전담기관을 활용한 지원보다는 기관별 전문성에 기반한 상호 협력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하기보다는 제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지원 내용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존의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별도의 전담기관 지정

근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안 제51조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지원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세제지원의 경우 ① 「조세특례제한법」, ② 「국세기본법」, ③ 조약,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을 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1항²²⁾에 따라 「조세특

22)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례제한법」에 별도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임.

(8) 보칙

안 제8장은 보칙 규정으로 보고와 검사, 위반 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권한의 위임·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 제 등 법 시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2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원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54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사업비 환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53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또는 수탁단체에 출연 또는 보조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안 제52조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제정안에 따른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 지원사업 수행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등 행정조사 권한을 규정하는 내용임.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외에는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²³⁾ 제정안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담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안에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따라 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전담기관,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전담기관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이와 관련된 자구를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53조 및 안 제54조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사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위반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

구체적으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이나 그 임직원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을 저지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하여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정안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려는 것으로, 제정안에 따른 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국가재정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56조는 제정안에 따라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하여 뇌물에 관한 죄를 규정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는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제정안에 따른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의 임직원 등이 공공성을 가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를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이해되며,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9) 벌칙

안 제9장은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57조(과태료) ①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안 제57조는 안 제52조에 따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10) 부칙

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 부칙은 법률안의 시행일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내용 중 일부는 기존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바, 해당 법률들의 관련 규정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제정안에 따라 기존 법률의 지원 근거의 이관이 필요한 사항은 66페이지 참고자료 1의 표와 같음.

다만,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다른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의 변동을 동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심도있는 논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문 의 처
02)6788-5463

【참고자료】

1

현행 법률 규정과 제정안과의 관계

□ (현행 법률) 4개 법률, 9개 조문 → (제정안) 9장 57조

현행 법률		제정안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중소기업 국외 판로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국외판로지원계획 종합·공표 의무 * (안) 제7조로 확대이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신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제4조(수출 및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책무) 신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신설
	제31조(중소기업 수출입동향의 분석·공표) - 중소기업 수출입동향 분석·공표 의무 * (안) 제10조로 확대이관	제2장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체계	제6조(수출 및 해외진출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제7조(중소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위원회) 신설 제8조(실태조사) 신설 제9조(지원정책 간 연계 및 통합공고) 이관 제10조(관계 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 신설 제11조(자료의 요청) 신설 제12조(해외진출 동향의 분석·공표) 이관 제13조(성과의 평가) 신설
	제26조(판로지원사업) -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 * (안) 제23조, 제39조, 제40조로 분리·확대이관 (국외부분)	제3장 수출 및 무역환경 대응력 제고	제14조(정보 제공), 제15조(상담창구 운영) 신설 제16조(대응체계 구축), 제17조(긴급지원), 제18조(사후관리) 신설
	제28조(연계생산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의 생산·판로 연계 지원 의무 - 공동상표 도입·이용 지원 근거 * (안) 제43조로 일부이관	제4장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제19조(수출전략 수립 지원) 신설 제20조(수출용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이관 제21조(교육 지원), 제22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신설 제23조(해외마케팅 지원) 이관 제24조(온라인 수출 활성화) 신설 제25조(해외수출규제 대응 지원) 이관 제26조(금융 지원), 제27조(통관 지원) 신설 제28조(물류 및 유통 지원) 신설 제29조(수출중소기업 지정 및 우대) 이관 제30조(유형별·단계별 수출 성장 촉진) 신설
	제30조(수출중소기업 및 유망품목의 지정·지원) - 국외 판로확대를 위한 수출 중소기업자 및 유망품목 지정·지원근거 * (안) 제29조, 제43조로 분리이관	제5장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생태계 구축	제31조(지원대상), 제32조(지원기준) 신설 제33조(사전준비 지원) 신설 제34조(교육 지원), 제35조(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신설 제36조(현지화 지원) 신설 제37조(금융 지원) 이관 제38조(사후관리) 신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 -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추진 근거 * (안) 제25조로 일부(해외규격 획득 부분) 확대이관	제6장 해외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 지원	제39조(해외 구매자 발굴 지원) 이관 제40조(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이관 제41조(외국정부와의 협력) 신설 제42조(국제 중소기업 협력사업 추진) 신설 제43조(유망품목 발굴 및 육성) 이관 제44조(공동상표 도입 및 이용 지원) 이관 제45조(시장별 특화지원) 신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국제화 지원사업) - 국제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 및 외국과의 산업기술능력에 관한 지원사업 실시 의무 * (안) 제20조로 일부이관	제7장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기반 조성	제46조(지원거점) 이관 제47조(재외공관 및 타 기관 협력), 제48조(민관협력 활성화) 신설 제49조(온라인 수출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신설 제50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1조(세제지원 등) 신설
	제59조(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 생산시설 이전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정보제공 근거 * (안) 제37조로 확대이관	제8장 보칙 및 제9장 벌칙	제52조(보고와 검사), 제53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신설 제54조(사업비 환수),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신설 제5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신설 제57조(과태료) 신설
무역거래 기반 조성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중소기업수출지원 센터의 설치·운영)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 (안) 제46조로 확대이관		

□ KOTRA

- 지원내용 : 국내기업의 수출·해외투자진출 상담·컨설팅

수출	해외 투자 진출
· 해외진출전략 및 무역실무 전반 · 거래선 발굴 방법 · 인증 및 규격 · 대금결제 및 금융 · 해외시장정보 · 관세, 통관절차 ·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안내	·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

- 전화, 온라인, 모바일 (채팅상담·챗봇), 내방상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출문의 및 해외투자 관련 무료 상담
- KOTRA 본사 수출전문위원 및 해외무역관이 고객 문의에 대하여 맞춤형으로 72시간 내 답변

- 지원대상 : 수출·투자진출 관련 상담이 필요한 국내기업

- 신청방법

전화상담	1600-7119	온라인상담	KOTRA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팅상담	카카오톡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수출 투자 챗봇	KOTRA 홈페이지
방문(내방) 상담	02-3460-7218 사전예약 후 KOTRA 본관 1층(해외진출상담센터) 방문 상담		

□ 수출지원센터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서 수시애로상담, 상담·설명회, 컨설팅, 수출교육 등 지역기업 밀착지원
 - **(수시애로상담)** 수출지원센터 소속 수출 전문관 중심으로 지역 중소기업 수출애로를 온오프라인으로 수시상담
 - **(미 관세조치 대응)** 15개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세 피해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1:1 담당관제 운영 ('25.5~)
 - * 수출센터 직원과 피해기업을 1:1 매칭,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 등 지원
 - **(설명회·컨설팅)** 수출지원센터와 유관기관이 함께 수출지원 정책, 수출전략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상담·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 수출기업 교류행사, 지역 수출 유관기관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애로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
- **지원대상** : 지역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센터내방)** 중소기업이 해당 지역 지방중소기업청에 있는 수출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수출애로 상담
 - **(현장방문)** 수출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지역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수출애로 상담
 - **(전화상담)** 수출지원센터 담당자와 유선으로 상담하고 심층상담 필요시 수출지원센터 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하여 상담.
 - **(인터넷상담)**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애로접수 창구에 등록하면 센터 담당자가 온라인 답변하고 필요시 방문상담

- **(배경)**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등 미 관세조치에 수출 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정책들을 활용한 대응체계 구축 필요

*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발표 ('25.9.3)

- **(내용)** 중소기업이 관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기부 수출지원센터 및 비즈니스지원단, 코트라 관세대응 119, 관세청 공익관세사 등을 활용하여 대응체계 구축

- 15개 지방중기청 '수출애로신고센터'를 통해 美 관세조치로 인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밀착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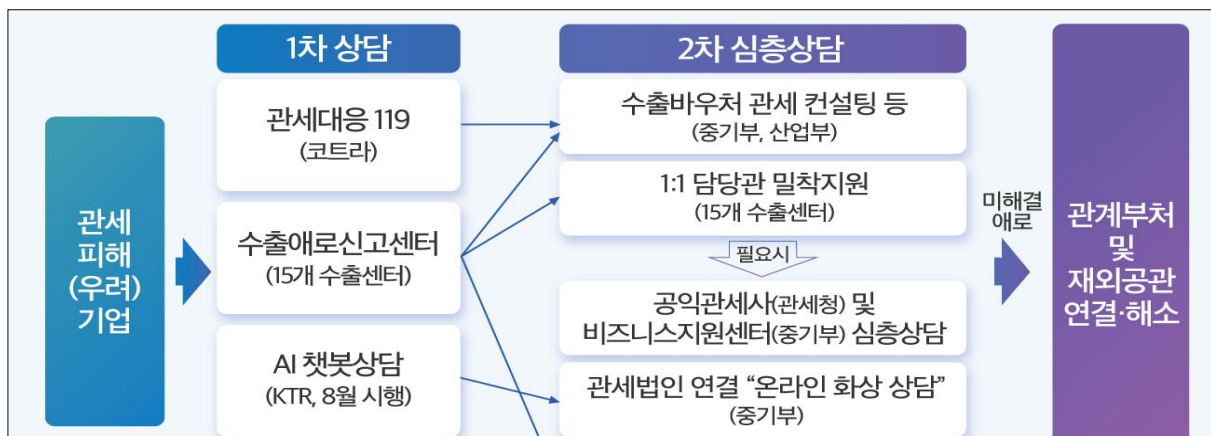
* '25.하반기 변경되거나 확대 지원 되는 관세 지원 정책 상담·안내, 정책 연결

- 15개 수출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관세 피해기업의 밀착지원을 위해 1:1 담당관제 운영 ('25.5~)

* 지방중기청 직원과 피해기업을 1:1 매칭,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연계 등

- 심층상담 및 관세 컨설팅 필요 기업은 수출애로신고센터 및 권역별 매칭 구축된 관세청 공익관세사 1:1 컨설팅 지원

< 지역 관세 피해(우려)기업 현장밀착 대응체계 >



- 관세로 인한 경영애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수출바우처 등 수출지원사업 개편 운영

*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지원 방안」 발표 ('25.5.14)

- ❶ (긴급유자) 국내 중소기업들의 글로벌 통상 리스크 대응 및 경영애로 지원을 위한 **0.4조원** 긴급자금 추가 공급 ('25.5~)

구 분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규모 (추경)	5,500억원 (+3,000억원)	1,000억원 ('25. 한시 신설)
지원대상	일시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 환율·보호무역피해, 원자재 상승 등	美 품목관세 조치 업종* 및 對美 수출 중소기업 * 향후 추가 지정업종 포함 예정
한도/기한	운전 10억원/5년 이내(2년 거치)	운전 10억원/6년 이내(3년 거치) 시설 30억원/10년 이내(4년 거치)
금리조건	기준금리+0.5%p	기준금리-0.3%p
만기연장	-	1년(기업 요청시)

- 신속 자금집행을 위한 **평가절차 간소화** (정책우선도평가 면제) 및 **수시 접수·본심사 패스트 트랙*** 적용 등 추진

* 지방중기청 (지역별 협의회)에서 중진공에 추천한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본심사

- ❷ (보증신설) 美 관세정책 등에 따른 피해기업, 첨단기술 기업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 특례보증**' 신설, **4.2조원** 공급 ('25.5~)

* 1) 기보 : 700억원 → **1.2조원 공급**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최대 0.4%p 감면)

2) 신보 : 1,000억원 → **3조원 공급** (최대 5억원, 보증비율 90%, 보증료율 최대 0.5%p 감면)

- 관세애로 신고센터 추천을 받은 美 관세정책 피해기업은 기술현황표 등 제출 서류 **간소화*** 조치

* 보증금액 2억원 이하 기업은 기술사업계획서 10쪽 내외 → 기술현황표 1~2쪽

③ **(수출바우처)**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규모 대폭 확대 (1,745억원 추가 공급)

* 관세 대응 패키지(대체 공급망 확보 등),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 애로 종합 지원

- 관세피해기업 전용 관세서비스*를 신규 개발, 기존 수출바우처 서비스 메뉴(14개 분야 8천여개) 도 활용토록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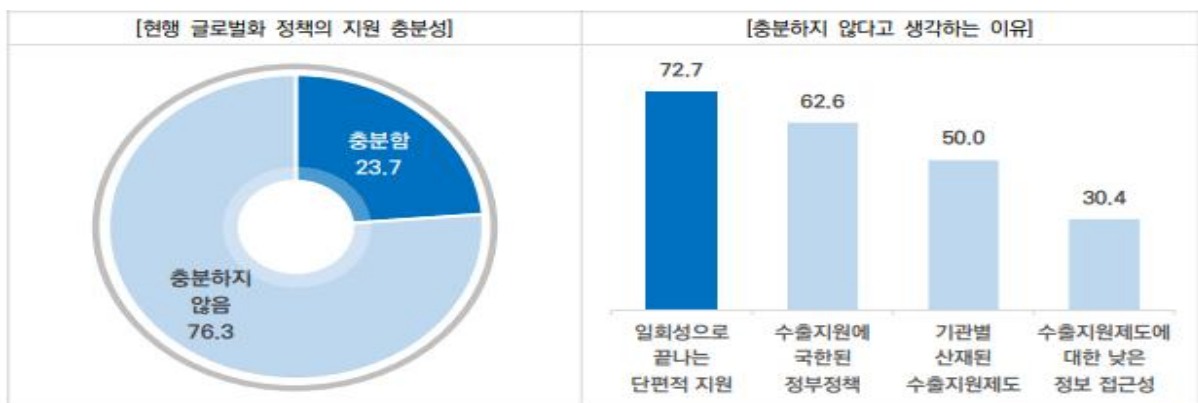
* (기존) 관세 컨설팅, 서류대행 → (추가) 해외 관세 전문법인 및 네트워크 활용 등

- **(배경)** 매년 수출 중소기업의 25% 내외가 다음 1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수출중단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지속적인 수출성과 창출에 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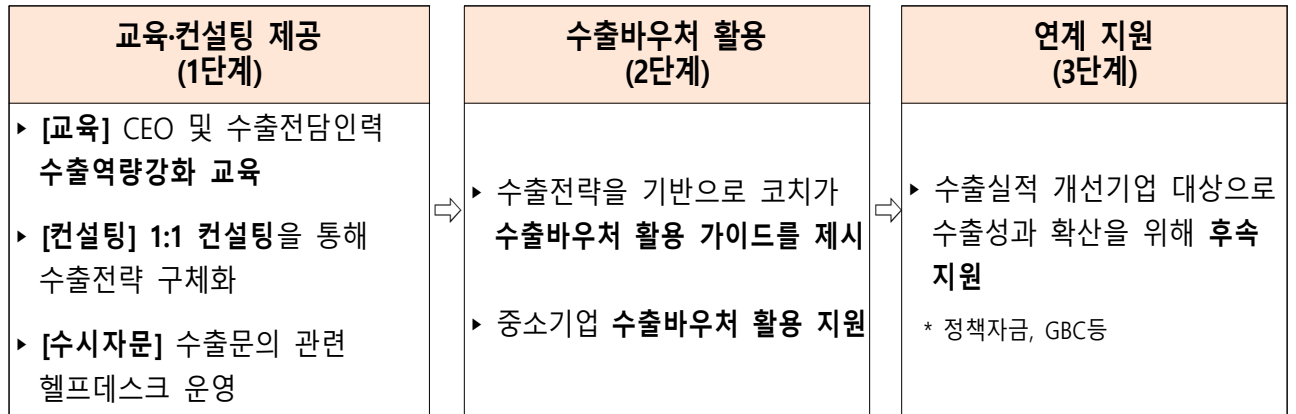
* 연도별 수출기업 대비 수출중단기업 비율 : ('22) 25.0% → ('23) 24.1% → ('24) 24.8%

- 기업들도 '일회성으로 끝나는 단편적 지원 (72.7%)'으로 인해 정부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

※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24.4월, 중기부·중진공)



- **(추진방향)** 수출 중소기업이 중장기적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출전략 수립 지원 근거 마련 및 관련 사업 기획
- 수출전략 및 수출전담조직 고도화 + 전략 기반 현지화 등 수출 실무 수행 + 후속지원을 통합한 **3단계 걸친 육성모델** 마련 예정 ('26)
- **(향후계획)** 수출바우처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전략 수립 지원사업 '26년 시범 운영



- 수출실무, 통상이슈, FTA, 해외인증 등 수출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해 수출지원센터, 코트라, 무역협회, KTR 등과 협업하여 교육('25년 82회)

<'25년 지역별 수출교육 현황>

구분	교육내용
전지역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교육: 디지털 마케팅, 이커머스와 관련 주제
경기	글로벌 이슈대응: 美 고관세, 환율 대응, 탄소중립, KOICA ODA활용 마케팅 등
서울	FTA 실무역량 강화: 관세 동향, 원산지 증명제도의 이해, 증빙서류 작성·실습 등
	바이어발굴 온라인 교육: 빅데이터플랫폼 활용 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방법
대구 경북	수준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신시장진출, 수출실무과정 등
	무역실무 아카데미: 수·출입절차, 무역계약·운송·보험 등 무역실무정보 제공
충남	수출 실무교육: 해외시장 진출전략 수립, 수출 첫걸음 기초과정 등
경남	통상동향 대응: 미 관세 동향, EU CBAM 대응, 해외규격인증, 방산물자 등
울산	美 관세대응: 미 관세 동향,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대응 등

-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을 활용하여 수출실무, 통상이슈, 수출전략 수립 등을 교육
(‘25년 오프라인 12회 실시, 온라인 225개 과정)

<'25년 수출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현황>

구분	교육내용
오프라인	미국 관세부와 정책과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미국 관세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수출역량강화 정책연수
	해외 시장 이해를 통한 수출 전략 수립 (6회)
	해외 선진기술 벤치마킹 및 중국 수출 전략 수립
	무역실무[수출입계약]
	해외 사업 개척 실무
	해외 인증 추진 전략
온라인	시장정보: 중동, 중국 등 국가별·지역별 시장 정보제공
	무역실무: 무역개념 및 무역용어, 무역 계약 프로세스, 수출입통관 등
	통상동향 대응: EU CBAM, 공급망실사 및 ESG, 할랄, 코셔 등 해외인증 등
	해외마케팅: 브랜드네이밍, 수출 마케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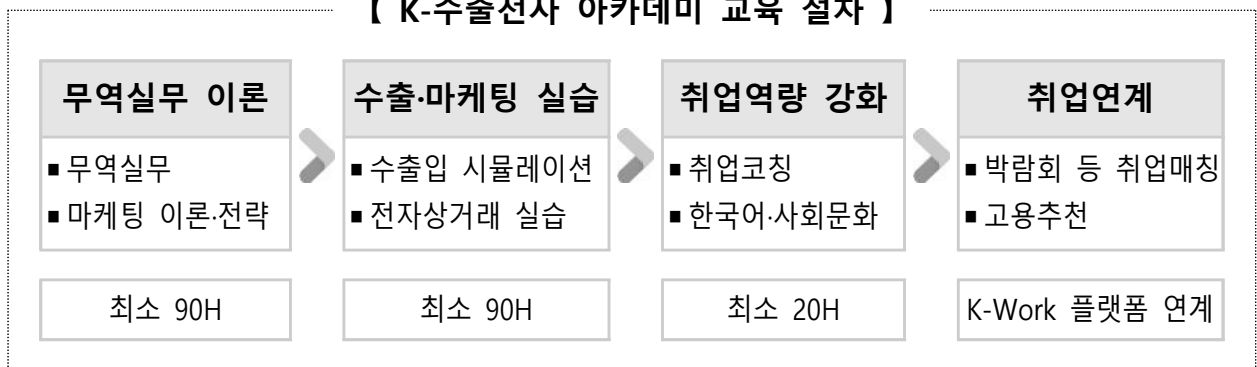
- **(배경)**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수출이 어려운 고질적인 애로 중 하나로 수출전담 조직·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

* 중소기업은 제품력이 우수해도 해외영업직원 구인이 어려우며, 구인 후에도 교육 및 숙련도 축적에 1~2년 이상 소요 (수출중소기업 간담회, '25.4)

□ **중기부 지원사례 (K-수출전사 아카데미)**

- **(운영체계)** 외국인력 대상 「무역실무 이론 → 수출·마케팅 실습 → 취업코칭」의 취업 맞춤형 교육으로 수출전문인력 양성

【 K-수출전사 아카데미 교육 절차 】



- **(교육대상)** 중소벤처기업 수출직무 희망 외국인 유학생 300명

1. 일반 수출규제

□ **(배경)**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 시 필요한 인증획득 지원 등을 위해 '98년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추진

- 그간 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위주로 사업을 운영
- 최근에는 글로벌 시장 개척·확장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수출규제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장

※ '25년부터 사업 명칭도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으로 변경

□ 중소기업 지원내용 (해외인증획득비용 지원 내용 제외)

① 해외규격인증 전담대응반

- 해외수출규제 전담대응반 주요 상담 분야* 확대 및 심층상담을 통해 애로사항 해소 지원 강화 (2,795건(전년대비 71.0% ↑))

* 유럽(CE, CPNP, REACH, ROHS), 미국(FDA, NRTL, FCC), 중국(NMPA), 일본(PSE), 국제(IECEE, HALAL, IECEx) → **(확대) 중국 CCC, 베트남(DAV), 국제(GRS)**

< 전담대응반 상담 결과 >

상담구분		'24년 (건)	25년 (건)
일반상담	유선(ARS)	765	1,352
	모바일(카카오톡)	163	212
	온라인(게시판)	224	298
	합계	1,152	1,862 (61.6% ↑)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상담	210	152
	오프라인 상담회	282	718
	상시 오프라인 상담	-	14
	합계	492	884 (79.7% ↑)
관세 상담	온라인 상담	-	65
총합계		1,644	2,811 (71.0% ↑)

- 일반상담 (ARS, 모바일, 온라인), 전문심층상담 (온라인, 오프라인) 및 관세 상담을 통해 실시간 수출 애로사항 해소 지원*
- * 전년대비 일반상담 61.6%, 전문심층상담 79.7% 증가 / 특히 **오프라인 상담회 718건 (154.6%), 유선 1,352건 (76.7%)** 순으로 상담 수요 크게 증가)
- **(상담센터 구축)** 전담대응반에서 시행중인 권역별 오프라인 심층상담회를 상시로 가능하도록 관리기관에 상담센터 구축

② 수출규제 및 인증교육

- 최신 인증정보제공을 위해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 해외인증획득 절차 교육 및 수출 규제 대응세미나 등 실시
- * 총 159회 5,397명 (4,401개사) 교육 실시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현황 >

구분	내용	횟수	기업수	교육인원 (명)
일반교육 (설명회 포함)	인증절차교육	70	1,940	2,347
심화교육	기술문서작성실무	42	717	904
K-뷰티	화장품규제대응실무	20	259	302
관세설명회	관세대응방안	25	1,103	1,302
규제세미나	수출규제동향	2	382	542
계		159	4,401	5,397

- 중소기업 인증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개요, 준비절차, 사례 등에 대한 **실무교육*** 실시 (총 132회, 3,553명 참석)
- *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해외인증 관련 교육 및 K-뷰티 특화교육 등
- 지역별 **관세 설명회***, 분야별 **규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등 전파 (총 27회, 1,844명 참석)
- * 권역별 美 관세대응 중소기업 지원 정책 설명회 및 상담회 (25회)
- ** 글로벌 화장품 수출규제·관세 세미나, EU 환경규제 세미나 등 (2회, 식약처 협업)

< 교육 및 세미나 현장 사진 >



2. 공급망 대응

[①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 구축]

- (사업목적)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28.7월~) 대비 협력 중소기업에 심층진단 등 지원을 통한 공급망 재편 등 리스크 점검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인권·환경·기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관리

- (지원규모) 1,880백만원(200개사)

- (지원대상) '28.7월부터 시행 예정인 EU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등에 직·간접 영향을 받는 국내·외 원청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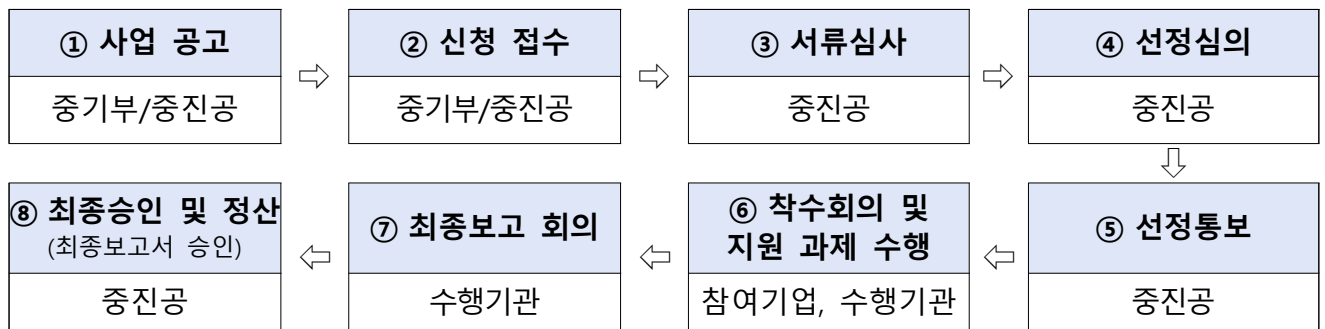
* 국내 EU 수출액 15억 유로 초과(50여개), EU매출액 15억 유로 및 직원수 5천명 초과

- (지원내용) 경영 체계 등에 대한 심층 진단,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국제 인증 취득 지원 등 단계별 지원

- (심층진단) 평가 전문가의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체계, 리스크 요인 등 종합적·심층적 진단 지원

- **(개선 컨설팅)** 중소기업 취약 지표 개선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산업안전보건 등 분야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 **(인증지원)** 탄소중립 관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국제 인증 취득 희망 기업에 전문 컨설팅 및 취득비용 지원

□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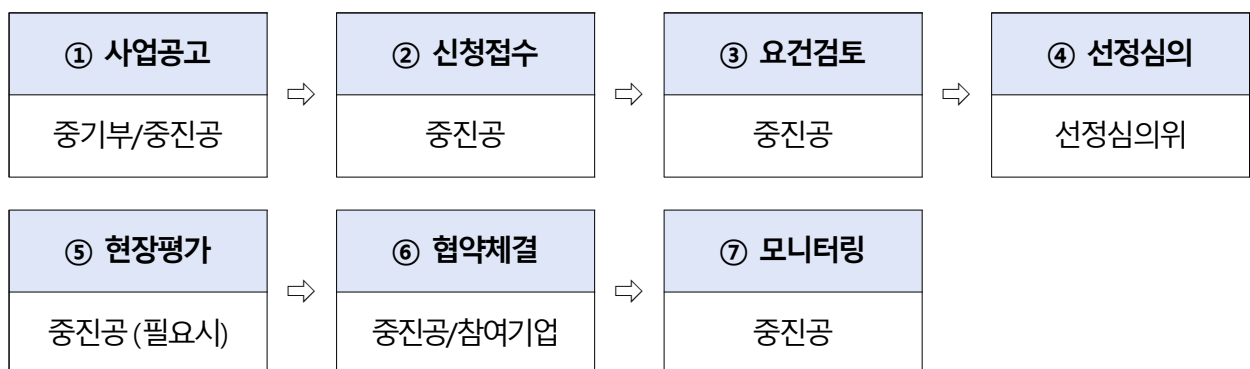


[②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 **(사업목적)**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현장 맞춤형 **MRV**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
- **(지원규모)** 1,010백만원(20개사 내외)
- **(지원조건)** 보조율 70%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
- **(지원내용)** 에너지 투입량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배출량 산정 및 실시간 관리 인프라(HW+SW) 구축 및 규제 대응 밀착 지원

- **(HW)** 생산공정 경계 내 에너지 사용량 계측기, 센서 등 수요 기업 맞춤형 에너지 사용량 측정 설비
- **(SW)**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탄소 배출량 자동 산정, 규제·제도 기준에 따른 보고서 산출 등 솔루션
- **(검증)** 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담보

□ 추진절차



[③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

- **(사업 목적)** 중소기업의 에너지 고효율 및 친환경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규제 대응력 향상
- **(지원 규모)** 19,055백만원(약 140개사)
- **(지원 대상)**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 * 화학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등 탄소多배출업종, 산업단지 非입주기업 우대
- **(지원 내용)**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과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

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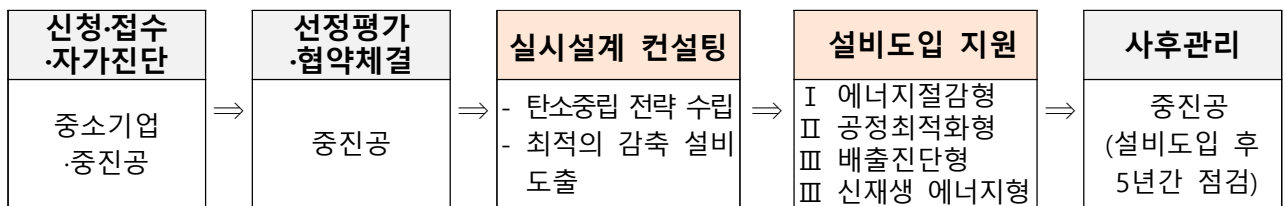
- **(설비도입 지원)** 탄소배출 감축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최대 3억원)

- **(설비 유형)** 에너지절감형, 공정최적화형, 배출진단형, 신재생에너지형 총 4가지 유형의 감축 설비

구분	세부유형	의미	지원 설비
내부 역량 강화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설비	인버터형공기압축기, 고압스크류컴프레샤 등
	공정 최적화형	AI 기반 공정 최적화 설비	AI 기반 생산공정 제어 시스템(장비), 스마트 센서 기반 자동제어 시스템(장비)
외부 환경 대응	배출진단형	모니터링·측정 장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 제어장비, 모니터링장비 등
	신재생에너지형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설비	태양에너지,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 지원한도(3억원) 내 유형 간 다수의 설비 지원 가능

□ 지원 절차



- (배경)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가 시행되었으나('25.3.12)로 철강 함량가치 산정 등에서 기업 애로 다수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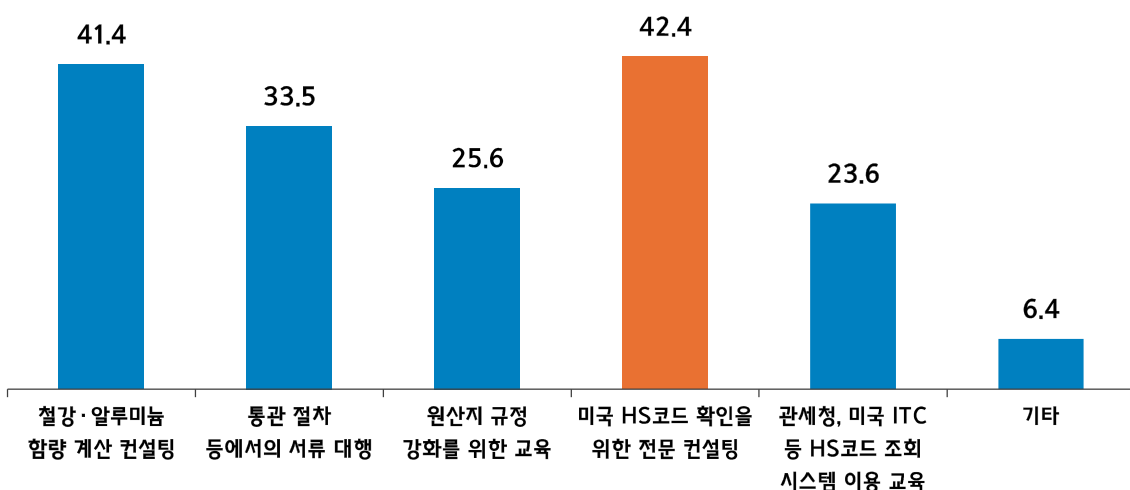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는 파생상품 전체 가치 중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나, 가치 산정에 대한 가이드 미비로 기업 혼란 多

- (애로현황) 중기부·중기중앙회 공동 설문조사를 통해 '미국 HS 코드 확인', '함량 계산 컨설팅' 등 통관 관련 다양한 지원수요 확인

※ 美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25.3.31, 중기부·중기중앙회)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의 경우, '미국 HS코드 확인을 위한 전문 컨설팅'이 42.4%로 가장 높은 응답률 기록
- 다음으로는 '철강·알루미늄 함량 계산 컨설팅'(41.4%), '통관 절차 등에서의 서류 대행'(33.5%) 등의 순으로 나타남

(Base: 파생상품 수출 기업 중 수출이 어려운 기업, n=203, 단위: %, 중복응답)



□ **(지원내용)** 수출바우처*, 공익관세사(관세청) 등을 활용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관세·통관 관련 컨설팅 지원

* 관세 리스크 진단 및 대응방안 수립, 서류대행 등 지원 가능

○ KB 국민은행 협업 '품목관세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하여 함량가치 산정, 미국 HS코드 확인 등에 특화된 컨설팅
제공

*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 계산에 필요한 정보, 증빙 또는 산정방법, 미국의
품목분류기준에 따른 HS코드 분류 지원, 제강·제련·주조국 등 신고 필요사
항 안내